

국무총리 행정조정실

사  
본

국무총리 지시 제 11 호 (70-2012) 1975. 8. 2

수신 :

제목 : 1975년도 제 1차 특별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지시

금번 조답청에서 실시한 특별재물조사 결과 물자관리 요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물자관리 업무가 많이 발전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이 지시하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.

다  
음

1. 재물조사 결과 발견된 초과품 및 부족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장부등재, 손망설 처리, 재물조정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과장품 및 불용품에 대하여는 사용 가능품은 관리 전환등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불능품은 조속히 처분할 것.
2. 물자의 취득과 공급은 과거의 사용실적, 사업계획, 재고량등을 감안한 과학적인 관리기준을 설정한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는 체계를 확립할 것.

국무총리 지시 제 10호

1975. 8. 2



3. 물품의 수불과 기록유지는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고 재고품의 보관관리와 물자의 품질보장을 철저히 할것.

4. 각 기관장은 물자관리 업무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소속 관계직원의 감독을 철저히 할것이며 물자관리 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할것.

5. 특별재물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할것.

끝.

국 무 총 리